

수원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나9941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하나로

담당변호사 백강수

피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진

변 론 종 결 2023. 6. 22.

판 결 선 고 2023. 7. 13.

제1 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0. 18. 선고 2021가단55708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9. 10. 12.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948,21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원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자 B와 피고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 (피고와 B의 부친 C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 한다)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가액배상)을 구한다.

나.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이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이는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이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마찬가지이다. 상속의 포기는 비록 포기자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는 바가 없지 아니하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같이 볼 것이 아니다. 오히려 상속의 포기는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한 행위에 대하여 비록 상속인인 채무자가 무자력상태에 있다고 하여서 그로 하여금 상속포기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에 가지던 모든 재산적 권리 및 의무·부담을 포함하는 총체재산이 한꺼번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서 다수의 관련자가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위와 같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좌우하는 상속포기의 의사표시에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에 대하여 채권자 자신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채권자취소권의 적용이 있다고 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그 법적 처리의 출발점이 되는 상속인 확정의 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다. 또한 상속인의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상속의 포기가 그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인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한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이처럼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가운데, 설령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약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되었더라도 그 협의 내용이 포기자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후 포기자의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됨으로써 상속포기의 효과가 적법하게 발생한 경우라면,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역시 상속포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등 참조).

다. 망인의 사망 당일인 2019. 10. 12. B과 피고, D 사이에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이 이루어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은 B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후 실제로 B가 상속포기 기간 중인 2019. 12. 3. 수원가정법원 2019느단2303호로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2020. 1. 10.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약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국현, 판사 김용태, 판사 이은희

별지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8층 공동주택

1층 17.6㎡

2층 225.27㎡

3층 225.27㎡

4층 248.9㎡

5층 248.9㎡

6층 232.49㎡

7층 192.7㎡

8층 143.49㎡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82.04㎡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대 668.3㎡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 1. 668.3분의 39.8419, 같.

